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안 미 자 의원)

의 안 번 호	24-8

발의년월일 : 2024. 2. .

발의자 : 안미자,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남해석, 이상원, 차해영, 홍지광

1. 제정이유

최근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카드의 수량이 부족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정의(안 제2조)

- “고령운전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하여 정의함.

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안 제4조)

- **(지원범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원대상)**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시에는 구청장이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4. 2. 8. ~ 2.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교통안전법」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2.11. 8〉

(앞쪽)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 비용발생 요인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충전 교통카드 제작

(2)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1) 카드 제작비 : 105천원/장(충전금액 인당 100천원+카드 디자인비 장당 약5천원)

(2) 예상 추가 소요 카드 수

(단위 : 장)

연도	카드 제작 수량	비고
1차년도(2024)	300	2023년 미보상 대기자수 “118명”+α
2차년도(2025)	100	미보상 대기자 수 추정하여 수량 책정
3차년도(2026)	100	
4차년도(2027)	100	
5차년도(2028)	10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충전 교통카드 제작비용	31,500	10,500	10,500	10,500	10,500	73,500
	소계(b)	31,500	10,500	10,500	10,500	10,500	73,500
□ 총 비용(a-b)		31,500	10,500	10,500	10,500	10,500	73,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기타(구비)	31,500	10,500	10,500	10,500	10,500	73,500
합계	31,500	10,500	10,500	10,500	10,500	73,500

5. 덧붙이는 의견 : 교통카드 제작 수량은 교통카드 미수령자 수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김혜지
연 락 처	02-3153-960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차년도~5차년도 카드 제작수량 추정치

(단위:명)

구 분	2023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신청건수 (a+b)	1,051	1,000	1,100	1,100	1,100	1,100
교통카드 지급건수(a)	933	700	1,000	1,000	1,000	1,000
교통카드 미지급건수(b) =카드 제작수량	118[1)]	300	100	100	100	100

1) 6개동 교통카드 미지급 건수 118명 (2024년 지급 예정)

- 공덕동 42명, 신수동 35명, 서강동 28명, 망원2동 4명, 성산1동 4명, 상암동 5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